

# 심사보고서

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 충청북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707
----------	-----

2024. 10. 18.(금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0월 11일

-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민영완)

### 가. 제안사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충청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고자 「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대상사무 : 충청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
- 위치 :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일원 \* 도청 별관 2층(440㎡)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\*

\* 근거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- 수탁기관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에 해당되는 자(법인·단체·개인)
- 수탁자 선정 방식 : 공개모집
- 위탁 주요사무
  - 원아모집 및 입·퇴소 관리
  - 보육교직원 채용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
  - 보육시간,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-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 - 직장어린이집 내·외부 환경 및 시설물 등 관리
  -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건강·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
  - 어린이집 운영 관련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
  -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【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 계획(안)】**

○ 설치계획

- 실시설계 : '24. 10. ~ 12월 / 27백만원
- 인테리어 : '25. 1. ~ 4월 / 431백만원
- 시설인가 : 공사 준공 후 청주시 시설인가(신청 후 14일 이내)

○ 운영계획

- 시설정원 : 영유아 99명, 직원 23명(원장 1, 보육교사 14, 보조 교사 등 6, 조리사 2)
- 보육대상 : 본청·외청·사업소, 의회 직원 및 공무원 자녀(만 0~5세)
- 보육시간 : 07:30 ~ 19:30 \* 야간연장 22:00시 / 토요일, 공휴일 제외
- 운영방법 : 민간위탁
- 운영재원 : 도비보조(인건비, 관리운영비) + 정부보육료(관리운영비)

○ 소요예산(안) : 6,210백만원(5년간)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2025년 (7~12월)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비고
계	6,210	646	1,330	1,370	1,411	1,453	
인건비*	4,021	418	861	887	914	941	
운영비**	2,189	228	469	483	497	512	

\* 인건비 : 기본급, 각종 수당, 법정부담금, 기타 인건비(기간제 등)

\*\* 운영비 : 일반수용비, 공공운영비, 급식비, 교재·교구 구입, 교육활동 및 행사비, 복리후생비 등

**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**

- 본 동의안은 `25. 7월 개원 예정인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.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은 “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”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

다고 하면서,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.

- 우리 도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, 위탁보육비 지급해 왔으나, 충북도청 별관 신축으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직원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,
-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,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및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비추어 볼 때,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, 특별한 이견 없음.
- 다만, 본 동의안의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있어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9조(어린이집 설치기준) 및 제23조(어린이집 운영기준)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상 위법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#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 
번호

707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충청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고자 「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에 대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대상사무 : 충청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
- 위치 :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일원 \*도청 별관 2층(440m<sup>2</sup>)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\*
- \* 근거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- 수탁기관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에 해당되는 자(법인·단체·개인)
- 수탁자 선정 방식 : 공개모집
- 위탁 주요사무
  - 원아모집 및 입·퇴소 관리
  - 보육교직원 채용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
  - 보육시간,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-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 - 직장어린이집 내·외부 환경 및 시설물 등 관리
  -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건강·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
  - 어린이집 운영 관련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
  -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충청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 계획(안) \* 세부내역 별첨

- 위치 :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일원 \* 도청 별관 2층(440㎡)
- 운영계획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·운영
  - 시설정원 : 영유아 99명, 직원 23명(원장1, 보육교사14, 보조 교사등 6, 조리사2)
  - 보육대상 : 본청·외청·사업소, 의회 직원 및 공무원직원 자녀(만 0~5세)
  - 보육시간 : 07:30 ~ 19:30 \* 야간연장 22:00시 / 토요일, 공휴일 제외
- 소요예산(안) : 6,210백만원(5년간)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2025년 (7~12월)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비고
계	6,210	646	1,330	1,370	1,411	1,453	
인건비*	4,021	418	861	887	914	941	
운영비	2,189	228	469	483	497	512	

\* 인건비 : 기본급, 각종 수당, 법정부담금, 기타 인건비(기간제 등)

\*\* 운영비 : 일반수용비, 공공운영비, 급식비, 교재·교구 구입, 교육활동 및 행사비, 복리후생비 등

#### 나. 관계법령 : 별첨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7조(사업주의 비용 부담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0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❖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직원들의 보육 부담 완화 및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

## I 설치개요

- (위 치)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4번지 일원
- (설치규모) 440m<sup>2</sup>(도청 별관 2층), 실외놀이터 155m<sup>2</sup>
- (시설정원) 영유아 99명, 교직원 23명
  - (영유아) 99명(0세 4, 1세 13, 2세 24, 3세 25, 4세 15, 5세 18)
  - (직 원) 23명(원장 1, 보육교사 14, 보조 교사 등 6, 조리사 2)
- (운영방법)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관 선정·운영
- (소요예산) 1,104백만원 \*설계비('24년 2회 추경예산 반영)
  - 설계비(27백만원), 공사비(431백만원), 운영비<sup>7~12월</sup>(646백만원)

## II 운영방향

-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 및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보육공간으로 조성
- 친환경 교재·놀이기구 사용, 양질의 급식 제공(유기농 등),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구성
- 최상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보육기관에 위탁 운영

### Ⅲ 세부 추진계획

#### 1 설치계획

- (실시설계) '24. 10. ~ 12월 / 27백만원
  - 보육전문가 등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보육공간으로 설계 추진
- (인테리어) '25. 1. ~ 4월 / 431백만원
  - 보육공간 배치, 붙박이장·바닥·벽체·안전매트 등 친환경 자재로 공사
- (시설인가) 공사 준공 후 청주시 시설인가(신청 후 14일 이내)

#### 2 운영계획

- (시설정원) 영유아 99명, 직원 23명(원장 1, 교사 20, 조리사 2)
- (반 편 성) 0 ~ 5세반 까지 운영 \*보육 여건에 따라 변경

< 배 치 안 >

구 분	계	0세	1세	2세	3세	4세	5세	보조교사	조리사
영유아 수	99명	4명	13명	24명	25명	15명	18명	-	-
직원 수	22명	2명	3명	4명	2명	1명	2명	6명	2명

\* [교사 배치 기준] 0세(3명당 1명), 1세(5명당 1명), 2세(7명당 1명), 3~5세(15명당 1명)

- (보육대상) 본청·외청·사업소, 의회 직원 및 공무원 자녀(만 0~5세)
- (보육시간) 07:30 ~ 19:30 \* 야간연장 22:00시 / 토요일, 공휴일 제외
- (운영방법) 민간위탁 \* '24. 11. ~ 12월중 민간위탁 계획 수립 후 선정
- (운영재원) 도비보조(인건비, 관리운영비) + 정부보육료(관리운영비)

#### 3 민간위탁(안)

- (관련법령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
- (위탁기간) 위·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간\*

\* 근거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)

○ (위탁범위) 직장어린이집 개원 준비 및 운영, 시설관리 등

○ (위탁방법) 공개모집 \* 위탁대상 : 법인, 단체, 개인

<진행절차>



#### 4] 소요예산 산출

○ 총사업비 : 1,104,590천 원 (공사비 458,360 / 관리운영비 646,230)

<예산 세부내역 >

(단위 :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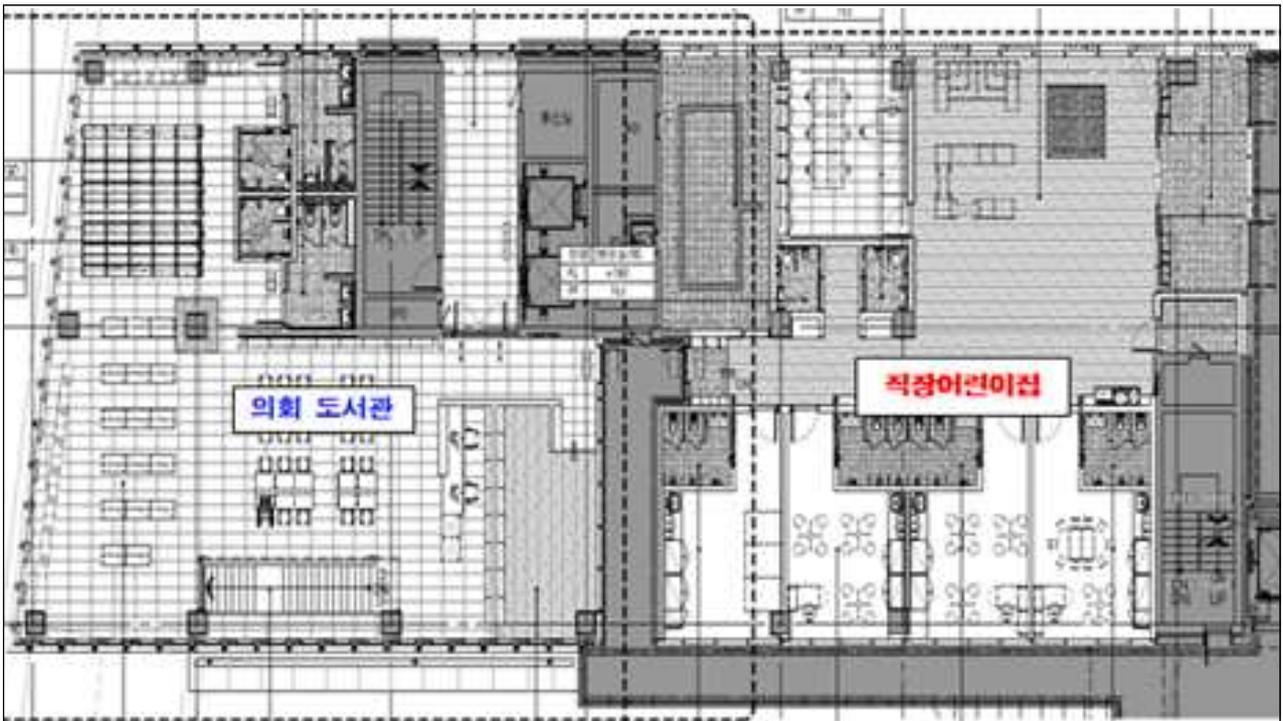
구 분	예산액	내용	비고
계	1,104,590		
공사비	458,360	- 설계비 : 27,000 / 시설비 : 425,000 / 감리비 6,360 ※ 불박이장, 안전설비, 바닥 및 벽체공사 등 친환경 자재로 인테리어 공사 시행	
관 리 운 영 비	소계	646,230	
	인건비	418,235	- 기본급, 수당, 법정부담금, 기타인건비(기간제 등)
	운영비	187,995	- 관리운영비(수용비, 시설유지비 등), 보육 활동 및 특별활동비 등
	개원준비	40,000	- 집기비품 및 사무용품(컴퓨터, 복사기 등) 구입
			7~12월분



□ 위치도



□ 평면도



① 추진근거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4조의2

② 검토의견

검 토 항 목	검 토 의 견	비고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가능성	○ 우수한 보육교사 채용·관리 및 최상의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육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	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 관련 전문 지식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 기관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	
③ 경제적 효율성	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으로 법령상 정해진 설치·운영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관련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의무 부담	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보육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출산·돌봄 전문지식, 인력 네트워크 등 활용 및 새로운 보육정책 개발 가능	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매년 직장어린이집 운영 평가 및 직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	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계약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 *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5조(지휘·감독)	
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	○ 최상의 보육시스템 도입 및 운영상 문제점 보완을 통해 이상적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도내 모범적인 사례로 확산 가능	